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3년 6월 21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(주)  
(영문명)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., Ltd.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shbnppam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02 신한금융투자타워 19F  
(전 화) 767-5000

대 표 이 사 : 조용병

담 당 임 원 : (직 책)전략사업팀 팀장  
(성 명)박철우 (전 화)767-9031

작 성 자 : (직 책)전략사업팀 과장  
(성 명)김도윤 (전 화)767-5726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2-1호)

사외이사 중도퇴임

1. 퇴임 사외이사 내역	성 명		스튜어트 에드가
	임기	시작일	2012.06.21
		만료일	2013.06.21
2. 퇴임사유			일신상의 사유
3. 퇴임일자			2013.06.21
4. 퇴임 후 사외이사 현황	이사총수(명)		4명
	사외이사총수(명)		2명
	사외이사비율(%)		50%
5. 대규모법인여부			해당사항없음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금일주주총회 신규사외이사 선임예정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(중도사임 또는 해임 등)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주2) “사외이사비율”은 이사총수에 대한 사외이사총수의 백분율을 기재한다.
- 주3) “대규모법인여부”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기재한다.
- 주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5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(제11-2-2호)

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

1. 퇴임감사 (감사위원) 내역	구 분		감사위원회 위원
	성 명		스튜어트 에드가
	임기	시작일	2012.06.21
만료일		2013.06.21	
2. 퇴임사유			일신상의 사유
3. 퇴임일자			2013.06.21
4. 퇴임 후 감사(감사위원) 현황	감사수(명)	상근	-
		비상근	-
	감사위원 수(명)	사외이사	1명
		비사외이사	0명
5. 대규모법인여부			해당사항 없음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금일주주총회 신규감사위원 선임예정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(중도사임 또는 해임 등)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주2) “구분”은 상근감사, 비상근감사, 감사위원회위원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다.
- 주3) “대규모법인여부”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기재한다.
- 주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5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